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능 변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위임

3.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
(안 제48조제1항 개정)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3.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개인”을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u>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u>
3. 제45조에 따른 <u>개인</u> 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u><신 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4. ----- <u>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u> ----- -----
	5. 법 제9조에 따른 <u>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u>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연 락 처	(044) 204 - 7726